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
------	-----

제출년월일 : 2002. 10. 28.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 현행 29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

2. 주요골자

- 현행 조례상의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29종”을 “60종”으로 세분화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3)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환경부 2001. 12)
 - 대형폐기물배출 및 수거체계개선지침(경남 환관67510-11275, 2002.6.12)
- 입법예고 : 2002. 8. 7. ~ 8. 26

4. 본문 : 덧붙임(개정부분 굵은 문체로 표기)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형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기준(현행)

<별표3>

(단위:원)

연번	품명	규격	처리비	연번	품명	규격	처리비
1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15	책상	양수대형	5,000
		300ℓ 이상				관수소형	4,000
		300ℓ 미만		16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그랜드	15,000				
2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17	울겐	모든규격	4,000
		12인치이상	3,000	18	신발장	모든규격	4,000
3	세탁기	모든규격	3,000	19	문갑	모든규격	3,000
4	에어콘	264㎡형이상	8,000	20	경운기	모든규격	10,000
		66㎡형이상	5,000	21	이앙기	승용	12,000
		66㎡형미만	3,000			보행	9,000
5	가스 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22	콤바인	모든규격	20,000
		높이1m미만	2,000	23	분무기	자동	8,000
6	탈수기	모든규격	2,000			수동	6,000
7	공기 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24	트랙트	50마력이상	15,000
8	장농	120cm장 1쪽	15,000			50마력이하	12,000
		90cm장 1쪽	10,000	25	바인더	모든규격	9,000
9	서랍장	5단이상	4,000			26	탈곡기
		4단이하	2,000	27	양수기	5마력이상	7,000
10	식탁	6인용이상	5,000			5마력미만	9,000
		6인용미만	4,000	28	캐비닛	모든규격	4,000
11	화장대	모든규격	3,000			29	화일 캐비닛
12	장식장	모든규격	4,000	3단이하	2,000		
13	응접세트	장의자	5,000				
		의자	2,000				
14	침대	1인용	10,000				
		1인용메트리스	5,000				
		2인용	15,000				
		2인용메트리스	8,000				

(주)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종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하며 그외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ℓ 당 20원으로하고 순수처리비는 톤당 2,200원으로 한다.

대형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기준(개정 안)

<별표3>

(단위:원)

연번	품명	규격	처리비	연번	품명	규격	처리비
1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15	책상	양수대형	5,000
		300ℓ 이상	6,000			관수소형	4,000
		300ℓ 미만	4,000	16	피아노		
2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그랜드	15,000
		12인치이상	3,000	17	울젠		
3	세탁기	모든규격	3,000			18	신발장
4	에어콘	264㎡형이상	8,000	19	문갑		
		66㎡형이상	5,000			20	경운기
		66㎡형미만	3,000	21	이앙기		
5	가스 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보행	9,000
		높이1m미만	2,000	22	콤바인		
6	탈수기	모든규격	2,000			23	분무기
7	공기 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수동	6,000		
		8	장농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50마력이하	12,000		
9	서랍장	5단이상	4,000			25	바인더
		4단이하	2,000	26	탈곡기		
10	식탁	6인용이상	5,000			27	양수기
		6인용미만	4,000	5마력미만	9,000		
11	화장대	모든규격	3,000			28	캐비닛
12	장식장	모든규격	4,000	29	화일 캐비닛		
13	응접세트	장의자	5,000			3단이하	2,000
		의자	2,000	30	가스 레인지		
14	침대	1인용	10,000			31	가습기
		1인용메트리스	5,000	32	믹서기		
		2인용	15,000			33	다림이판
		2인용메트리스	8,000				

연번	품 명	규 격	처리비	연번	품 명	규 격	처리비
34	벽시계	대형	4,000	51	전 자 레인지	모든규격	2,000
		중형	3,000				
		소형	2,000				
35	액 자	대형	2,000	52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소형	1,000				
36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53	캐비넷	모든규격	4,000
37	보행기	모든규격	2,000	54	컴퓨터 본 체	모든규격	4,000
38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5	컴퓨터 모니터	모든규격	3,000
39	선풍기	모든규격	2,000	56	컴퓨터 키보드	모든규격	1,000
4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57	전기담요	모든규격	3,000
				58	오디오 장식장	모든규격	3,000
41	쇼 파	3인이상	5,000	59	오디오	대형	5,000
		2인이하	2,000			소형	3,000
42	쌀 통	모든규격	2,000	60	교자상	모든규격	2,000
43	어 항	1M이상	3,000	<p>(주)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종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하며 그외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1당 20원으로 하고 순수 처리비는 톤당 2,200원으로 한다</p>			
		1M미만	2,000				
44	유모차	모든규격	2,000				
45	프린터기	대형	3,000				
		소형	2,000				
46	화 분	대형	2,000				
		소형	1,000				
47	의 자	모든규격	2,000				
48	자전거	모든규격	3,000				
49	장판	5M당	2,000				
50	전기 스토브	모든규격	2,000				